

과업지시서

사업명

공통교양 진로지도 콘텐츠 표준화를 위한
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

2024. 01.



명지대학교

목 차

1. 사업개요	2
가. 사업명	2
나. 수행기간	2
다. 지급방식	2
2. 추진배경	2
3. 목적	2
4. 사업범위 및 내용	2
5. 과업보고 및 결과물	3
6. 사업수행가이드라인	4
7. 기대효과	4
8. 과업 수행 지침	4
가. 용역의 참가자격	4
나. 용역의 보완·수정·변경	5
다. 용역의 지도감독	5
라.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	5
마. 보안사항	6
바. 분쟁 및 관할법원	6
사. 기타	6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: 공통교양 진로지도 콘텐츠 표준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
- 나. 수행기간: 2024.03.01.(금) ~ 2025.01.31.(금)
- 다. 지급방식: 계약대금 지급 계획
 - 1학기 종료 후 계약금액의 50% 이내 선급금 지급(1학기 결과 증빙자료 제출)
 - 최종보고 및 최종 산출물 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잔금 지급

2. 추진배경

- 가. 공통교양 교과목 콘텐츠 표준화를 통해 재학 초기 재학생의 진로지도 교육 강화
- 나. 과학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

3. 목적

- 가. 학생들의 학습 성향, 강점, 약점, 흥미 등 다양한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별 최적화된 진로지도 제공
- 나. 평가 분석 도구(사전·사후 효과 분석)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및 상담 제공

4. 사업범위 및 내용

가. 사업범위

- 1) 매학기 진행되는 진로교과목(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진로선택 등) 수강생(약 1,500명)을 대상으로 군집(cluster)¹⁾ 확정, 군집 장단점 분석 및 군집 정의 실시
- 2) 대면(4차시) 운영을 통한 진로적성검사, 진로설계로드맵 작성, 진로상담 실시
- 3) 인공지능 기반 군집 특성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진로 역량 강화 고도화 방안 제시

나. 제공서비스

- 1) 군집(cluster) 특성 맞춤 진로 설계 및 군집별 프로그램 개발
 - 군집 장단점 분석, 군집 정의, 군집 명칭 개발 등
 - 군집별 프로그램 개발(상세한 개발 근거, 프로그램 세부 상세 제시)
- 2) 재학생(표본 집단) 대상 프로그램 진로설계
- 3) 개발 제안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과학적 분석, 최종 군집 / 프로그램 세부 상세 제시 등

다. 세부 과업내용

- 1) 과학적 분석 기반 군집 확정, 군집 장단점 분석, 군집 정의, 군집 명칭 개발 등 컨설팅 진행
- 2) 군집(cluster)별 특성 맞춤 진로설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천(*<표1> 진로 군집별 특징 참고)
- 3) 추천된 프로그램 추후 진로취업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연계 실시

1) 군집: 학생 과학적 분석 기반 명지대학교 특성 맞춤 군집

군집	진로 군집별 특징
A군집	- 경험에 의한 익숙함을 선호하며 문제해결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선호하는 독립적인 그룹 - 세부적인 상황만을 생각하다 전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함
B군집	-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진취적이고 타인을 돕거나 지원해주는 활동을 선호함 -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편이기에 지지와 보완이 필요함
C군집	-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좋고 새로운 상황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함 -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성이 낮아 개방적인 태도로 의견을 수용해 줄 필요성이 있음
D군집	- 익숙함과 예측을 선호하며 분석적이고 성실히 자신의 과제를 수행함 - 융통성 및 순발력과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어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함

〈표1〉 진로 군집별 특징

- 4) 군집별 사전·사후 진로적성검사 실시
 - NCS 8개 영역 사전 및 사후 검사 실시(5점척도)를 통하여 진로취업역량 파악
- 5) 심층 진로상담 필요 학생 대상 개인상담 진행 및 기록지 작성(회당 2-3명)
- 6) 각 군집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
- 7) 군집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(군집별 운영방안, 특이사항 등)
- 8) 공통교양교과목 강의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아래의 내용은 차시별(4회)로 필수 운영

차시	내용
1차시	- 사전 오리엔테이션 -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적성검사(목표와 전략의 중요성)
2차시	- [자기이해] 현재 나의 상황 이해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
3차시	- [진로역량향상교육] 문제해결, 의사소통, 대인관계 역량 강화하기 - 직업 포트폴리오 작성
4차시	- [진로설계 로드맵 발표 및 선언] 포트폴리오 과제 발표 및 선언

- 9) 표본 집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군집별 운영 후 진로 설계 및 추진 역량 강화 정도를 과학적 분석으로 제시
 -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른 진로 설계 역량에 대한 효과성 검증
 - 군집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군집별 사전·사후 차이 분석

5. 과업보고 및 결과물

가. 과업보고

- 1) 착수보고: 계약 후, 7일 이내
- 2) 수시보고: 특기사항 발생 시
- 3) 결과보고서(초안): 사업 종료 7일 이전

4) 결과보고서: 사업 종료 시 14일 이내

나. 결과물 제출: 차시별 군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정 내용, 참여자 성향 분석, 교육 분석, 학생 반응 등

다. 결과보고서

- 1) 차시별 군집에 대한 프로그램 상세 운영결과
- 2) 군집별 진로 향상 강화 정도 평가를 위한 검사 체계
- 3) 사전/사후 군집별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한 학생 역량 향상 결과(과학적 분석)
- 4) 향후 진로지도 콘텐츠 표준화 개선방안 제시
- 5) 맞춤형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 제시
- 6) 각 주제, 차시별 프로그램 기록지 및 활동내역(사진 첨부)
- 7) 1:1 심층상담 및 진로탐색활동 참여 유도 방안 제시

6. 사업수행가이드라인

- 1) 해당 영역은 진로지도 교육콘텐츠 표준화 프로그램으로서 진로 필수교과목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바, 저학년 필수교양교과목(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진로선택) 수강생 전체(약 1,500명, 매 학기 40개 강좌)를 대상으로 대면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
※ 2024학년도 교과목 운영 여부에 따라, 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
- 2) 80개 반 운영(40개반×2학기)으로 진행하며, 모집 등의 사유로 축소 운영될 경우, 실제 운영 횟수에 따라 금액 지급함
- 3) 2024년 국고사업 선정 시, 진로취업지원팀 추가 상담인력 배치를 통해 총 4주 중 최대 2주 자체 운영 가능할 경우, 실제 운영 횟수에 따라 금액 지급함
- 4) 재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설계 및 직업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NCS 8개 영역별 사전/사후 진로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,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군집별 역량 향상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

7. 기대효과

- 1) 재학 초 자기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설계로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
- 2) 전체 신입생 대상 초기 진로설계 의무 시행으로 체계적인 취업준비 가능 및 중도탈락 예방

8. 과업 수행 지침

가. 영역의 참가자격

- 1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(이하 “국계법”이라 함)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명지대학교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
- 2)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
- 3) 교육서비스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(공동도급불가)
- 4) 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
- 5)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과업내용에 따라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
- 6)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업체, 법정관리업체, 회계개시업체 및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제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 대상에서 제외

나. 용역의 보완·수정·변경

- 1) “을”은 과업 기간 중 “갑”이 용역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요구할 경우 책임하에 보완·수정·변경하여야 함
- 2) “을”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의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“갑”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
- 3) 과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
- 4) 모든 보완 및 수정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진행해야 함

다. 용역의 지도 감독

- 1) “갑”은 “을”의 업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행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고,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2) “을”은 본 계약 내용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“갑”과 협의하고, 협의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.
- 3) 모든 실행계획은 “갑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라.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

※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“을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- 1)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- “을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, “을”이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
- 2)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
 -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,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
- 3) 용역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
- 4) 실제 운영인력,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

5)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
마. 보안사항

- 1) “을”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
- 2) “을”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“갑”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) 보안사항의 누설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시 “을”은 민·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.

바. 분쟁 및 관할법원

본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관할은 “갑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사. 기타

- 1)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시나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2) “갑”이 제안요청서나 계약조문과는 별도의 과업지시 사항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과업지시서를 계약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.
- 3) 기타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“갑”이 해석하고 정하는 바에 따른다.